

2019년개정판

# 주차 관리 규정



부천 테크노파크 4단지

#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주차 관리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관리규약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세부절차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편리하고 질서 있는 주차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정기주차”라 함은 입주사 및 그 임직원(이하 “입주사”라 한다) 소유 차량으로서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주차하는 차량으로 지원본부에 등록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2012.06.18 개정)
- ②. “월정주차”라 함은 입주사의 소유차량으로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원본부의 승인을 얻어 월정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월정추가”라 함은 월정주차 이외의 차량으로 월정주차료를 납부하고 주차타워 2층에만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2012.06.18 개정)
- ③. “시간제주차”라 함은 제 1항 및 제 2 항 이외의 차량으로 일시적으로 주차하고 주차시간에 따라 소정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2012.06.18 개정)

## 제3조 (적용과 대상)

이 규정은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과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 제4조 (주차관리의 기본방침)

- ①. 주차관리는 입주자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며, 방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②. 주차관리는 입주자의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한다.

## 제5조 (입주사지원본부의 의무)

- ①. 주차장 전반에 관한 계획, 조정, 통제 및 확인에 대한 관리
- ②. 주차장 내 제 시설물의 보호, 관리, 유지에 관한 관리
- ③. 주차관리 요원의 교육, 훈련 및 근무상태에 대한 관리
- ④. 요금의 계산, 기장, 배분 및 기타 정산에 관한 사항의 관리

## 제6조 (주차 관리요원)

입주사지원본부는 주차장 사용 차량의 질서유지, 통제, 방송, 안내, 경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 (주차장 사용시간)

- ①. 정문,후문 출입구는 24시간 개방한다. (2019.05.20 개정)
- ②. 입주사지원본부는 주차장의 보수 등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고,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금할 수 있다.

## 제8조 (주차권의 발행과 이용)

### ①. 정기주차권

1. 각 입주자의 정기주차권 배정 산정기준은 입주사별 분양면적 247.9㎡ (75평)당 2대로 한다.
2. 분양면적에 따라(247.9㎡ 당 무료주차2대) 정기주차권을 배정하고 남은 소량의 면적으로는 정기 주차권을 배정할 수 없다.
3. “지정 주차”는 입주사의 요청으로 각 입주사에 할당된 배정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 가능하고, 이 경우 해당 입주사는 지정주차 1대당 정기주차권 2대를 포기하여야 한다. 각 입주사당 최대 1대까지 지정 가능하고, 지하층 벽면쪽으로 총 60곳으로 운영한다. (단, 개정 전 2대까지 지정받은 입주사는 예외로 한다.)

(\*2012.06.18개정 이전에는 지정주차배분 기준이 모호하여, 2012.6월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였음.)

4. 지정주차의 배분은 입주사의 신청(지원본부의 신청서 작성)에 의하고, 각 항을 우선으로 배분한다.

가. 전층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를 우선순위로 배분한다.

나. 동별 면적에 의한 할당 지정주차 수 배분

(401동-21대, 402동-24대, 403동-16대)

(가. 의 경우 현재 입주하여 사용 중이어야 한다.)

### ②. 월정주차권

1. 월정주차권은 분양면적 247.9㎡(75평당) 1대씩 배정한다.
2. 월정주차는 1대 당 44,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하고 선납 한 차량에 한해서 지원본부가 월정주차 차량으로 등록한다. (2012.06.18 개정)
3. 월정주차의 사용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월정주차 개시일이 월중 일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잔여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일자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1,470원/1일) (2012.06.18 개정)
4. 월정주차료를 납입하고 사용하던 중 입주사 퇴거, 차량매도, 폐차,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월정주차를 미사용 시 잔여일수에 비례한 주차비 반환을 공문으로 청구할 수 있다. (2012.06.18 개정)

5. 입주자는 월정주차에 해당하는 차량 리스트에 입주사 대표의 날인을 받아 매월 말일까지 주차비를 선납하여야 익월에 등록된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12.06.18 개정)

6. 월정주차 차량이 기간만료 전 재연장을 하지 않으면 출차 시 시간제 일일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출차 시 발생한 일일주차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하여 월정주차를 갱신 시에는 납부한 일일주차료를 지원본부에서 환불가능 하다. (2012.06.18 개정)

단, 일일주차료 환불은 10일 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할 시 가능하다.

7. 주차권은 주차장 수용능력에 따라 제한 발급될 수 있다.

8. 월정추가차량은 기간 연장 후 주차 빌딩 2층에 주차하여야 한다.

9. 월정추가차량은 신청 시 월정추가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월정추가 차량은 주차장 수용능력에 따라 제한 발급할 수 있다. (2012.06.18 개정)

③. 차량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서면 통보하고 주차스티커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차량의 교체 및 자동차 점검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차량의 정보를 지원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지원본부의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지원본부의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 이 경우 변경된 차량정보 미제출로 인한 시간제 일일주차 요금 부과는 입주사가 책임진다. (2012.06.18 개정)

## 제9조 (주차요금)

①. 유, 무인 주차시스템 변경으로 입주사는 시간제 주차를 위한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포인트충전 금액은 30분당 5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2. 입차 후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이고, 초과 시 입주사확인 30분 무료, 30분 유료, 1시간 유료로 단계별로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포인트 충전은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충전하여 사용하여야한다.

4. 포인트 충전은 개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고, 입주사에만 판매 가능하다.

②. 주차요금은 유,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카드 미소지자는 정문 정산소에서 유인근무 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정기주차는 무료로 한다.

④. 주차요금은 차량이 출차 할 때 요금정산소에서 징수한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하였을 때는 해당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단 다음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로 방문한 차량
  2. 입주사지원본부의 요청에 의해 건물의 보수 등을 위한 작업차량
  3. 기타 응급을 요하는 차량
  4.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 소방법)
  5.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교육, 세미나, 이사회 및 기타 회의 참석으로 인한 방문차량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에 연간 포인트를 충전하여 공무면제를 시행한다.
- ⑤. 주차요금 변경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상 또는 인하를 입주사 대표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다.
1. 로보파크 관람객의 일요일, 공휴일 주차비는 정액제로 부과한다.  
( 3시간이내-1,000원, 일일주차-3,000원)
- (2019.05.20 개정 - 제9조 전체 / 주차관제 시스템 변경으로 개정)

## 제10조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주차장내에서는 1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차구획선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정확히 주차하여야한다.
- ④. 주차장내에서는 긴급사항 이외에는 경적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주차장내에서는 수리 · 급유 · 물세차 등 공해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고장 차량을 방치할 수 없다.
- ⑥. 주차장내에서의 차량 손실, 시설물 파손 등은 관리인에게 필히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정기주차권 및 월정주차권 차량은 운전석 좌측 하단에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⑧.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2012.06.18 개정)
  1. 화물 하역장 앞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2. 화물 상하차가 끝나면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야한다.
  3. 화물전용 주차장에는 1톤 이상 화물차량과 승합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4. 고객주차장(경비실 옆)은 우리 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입주사 임직원은 주차할 수 없다.  
고객주차장 개방시간 - 09:30 ~ 23:00
  5.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법정 주차장으로 일반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며, 장애인용 차량은 장애인 차량스티커를 반드시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주차하여야 한다.
- ⑨.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이용 시 주의사항

1. 입, 출차 시 번호 인식이 가능하도록 5km/h 이하로 유지하고 진입한다.
  2. 입, 출차 시 앞, 뒤 차량의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원본부에 등록된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시간제 일일 주차요금이 부과되므로 차량등록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4. 차량 미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번호판에 장식물이나 손상이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차량번호 오류등록 및 변경된 차량의 미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 ⑩. 고객주차장 이용 시 이용자는 반드시 연락처 또는 방문입주사명을 남겨둬야 한다.

### 제11조 (주차 및 출차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또는 출차를 제한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①. 주차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오손한 차량
- ②. 차량에 인화물 또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 ③.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 ④. 관리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주차 차량은 납부 마감 일로부터 2일후부터는 입차를 제한한다.
- ⑤. 다른 입주자의 정기주차용 지정장소에 2회 이상 주차한 차량
- ⑥. 주차권 발급의 허위사실 또는 부정사용이 있는 차량

### 제12조 (사고의 신고의무)

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충돌·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나 주차장의 시설 및 차량 등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 및 목격자는 입주사지원본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인명 또는 주차장 시설 및 차량 등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면책사항)

아래의 사항이 발생 시 주차장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적재물 또는 부착물에 대한 화재, 도난, 주차 관리자가 알지 못한 접촉사고나 차량의 손상, 기타의 손해
- ②.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차량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
- ③. 귀중품을 별도로 보관시키지 않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물품의 도난이나 멸실, 훼손 등의 손해

- ④. 지진, 풍수해, 전쟁 등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제15조 (주차요금의 관리 및 사용)

- ①. 주차료는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입주사지원본부에서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 ②. 주차료는 매월 말일 결산하여 입주사대표회의에 보고한다.
- ③. 주차료의 이익발생금액은 입주사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시설의 개선 · 보수 및 입주자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4. 9 . 13 . 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정한다.
- ③ 공석지정주차장은 차기 지정 시까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한다.
- ④ 개정
  - 1. 2012.06.18. 1차 개정 시행
  - 2. 2019.05.20. 2차 개정 시행

(별표1) 정기주차 배정표 / 월정기주차요금 / 시간제 주차요금

구분	주차 현황		비고
주차시설면적	9,625.43㎡		
주차대수	총 555대		
정기주차권배정 (무료주차권)	247.9㎡(75평) 2대 배정		
월정주차권	247.9㎡(75평) 1대 배정 월40,000원(VAT별도)		
시간제주차요금	무료	최초 30분 무료 (초과 시 입주사에서 추가 30분 무료)	
	유료	30분당 500원(VAT포함)	입주사에서 포인트 처리 가능.

(별표2) 주차시설 현황

구분		승용차 화물차(하역장)	장애인용	계
지상1층		163	(5)	168
지하1층		181	(10)	191
주차 타워	2층	111		196
	1층	85		
계		540	(15)	555